

비보건인의 간호법 제정 인식에 대한 내용분석

최은주¹ · 이선우² · 박상용³ · 양희선⁴ · 김은혜⁴ · 박예솔⁴ · 김미성⁴
최준희⁴ · 김한솔⁴ · 한지선⁴ · 현지희⁴ · 강인해⁴ · 박재숙⁴ · 정보람⁴ · 박선정⁵
¹청암대학교, 부교수 · ²삼육보건대학교, 부교수 · ³서영대학교, 조교수
⁴삼육보건대학교, 전공심화과정 학생 · ⁵삼육보건대학교, 조교수

An Analysis on the Content of Non-Medical Workers' Perception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Eun Ju, Choi¹ · Sun Woo, Lee² · Sang Young, Park³ · Hui Seon, Yang⁴ · Eun Hye, Kim⁴
Ye Sol, Park⁴ · Mi Sung, Kim⁴ · June Hee, Choi⁴ · Han Sol, Kim⁴ · Ji Seon, Han⁴
Ji Hee, Hyun⁴ · In Hae, Kang⁴ · Jae Sook, Park⁴ · Bo Ram, Jung⁴ · Sun Jung, Park⁵

¹Cheongam College, Associate Professor, ²Sahmyook Health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³Seoye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⁴Sahmyook Health University, Advanced Major Course Students
⁵Sahmyook Health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7권 제1호 2023년 3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7, No. 1, March. 2023

비보건인의 간호법 제정 인식에 대한 내용분석

최은주¹ · 이선우² · 박상용³ · 양희선⁴ · 김은혜⁴ · 박예솔⁴ · 김미성⁴
최준희⁴ · 김한솔⁴ · 한지선⁴ · 현지희⁴ · 강인해⁴ · 박재숙⁴ · 정보람⁴ · 박선정⁵

¹청암대학교, 부교수 · ²삼육보건대학교, 부교수 · ³서영대학교, 조교수

⁴삼육보건대학교, 전공심화과정 학생 · ⁵삼육보건대학교, 조교수

An Analysis on the Content of Non-Medical Workers' Perception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Eun Ju, Choi¹ · Sun Woo, Lee² · Sang Young, Park³ · Hui Seon, Yang⁴ · Eun Hye, Kim⁴
Ye Sol, Park⁴ · Mi Sung, Kim⁴ · June Hee, Choi⁴ · Han Sol, Kim⁴ · Ji Seon, Han⁴
Ji Hee, Hyun⁴ · In Hae, Kang⁴ · Jae Sook, Park⁴ · Bo Ram, Jung⁴ · Sun Jung, Park⁵

¹Cheongam College, Associate Professor, ²Sahmyook Health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³Seoye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⁴Sahmyook Health University, Advanced Major Course Students

⁵Sahmyook Health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the perception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among the non-health personnel. **Methods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apply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ith a view to identify the degree of perception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perceived by non-Health personnel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do from may 31, 2022 through november 1, 2022. **Results :** As a result of this study, a total of 36 categories and 95 statements were secure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e nursing act, the importance of the nursing act, the merits of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the disadvantages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and the need for education related to the nursing act.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dvantages of enacting the nursing act are the improved treatment of nurses, expansion of medical services, and an increase in the level of nursing care. whereas, it was perceived that financial problems due to the friction with other occupations, damage to nurses, rigidity of the nursing act, and the increased number of nursing personnel would be disadvantages. There was also the perception that there was a need for education on the precautions of the nursing act, medical theory, nurse and patient benefits, and the scope of nurse work. Accordingly, the nursing act is a universal legislative system common for the world and is a law that articulates and specifies the work of nursing personnel.

Key words : Awareness, Enactment, Health Personnel, Law, Nursing

교신저자 : Sun Jung, Park / (02500)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Health University, 82 Mang-uro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3407-8608, Fax : +82-2-3407-8619, E-mail : bun8973@naver.com

접수일 : 2023.02.22 / 수정일 : 2023.03.03 / 게재확정일 : 2023.03.1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간호 패러다임은 초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돌봄으로 변화되었으며, 간호업무의 영역도 요양기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산업체 등으로 다양화되었다[1].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세분화, 전문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간호사의 업무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 관련 법체계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3]. 이에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 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다[4].

반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간호계와 의료법 안에서 간호, 돌봄 행위가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토대로 관련 직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5]. 특히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간호사 업무의 규정이 간호법안에 규정되어 있기에 간호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단독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역에서는 간호사만을 위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안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6,7].

지난 2021년 5월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간호사가 적정한 노동시간 확보와 일, 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

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정부가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할 의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인력의 이직 방지, 처우 개선, 자질향상,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문화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 센터의 설립 근거 등이 담겼다[4]. 간호법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처우 개선, 지역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 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담은 법안이며,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8,9].

미국은 1903년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1923년 모든 주에서 간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38년 뉴욕주에서 간호사의 정의, 간호국의 구성, 간호 실무 표준과 범위, 간호교육 프로그램 교육, 면허 유형 및 조건 등을 포함된 간호 면허법이 도입되고 1971년 독립적 판단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기틀을 마련하면서 1996년까지 전문간호사 규정을 50개 중 49개 주에서 입법하게 되었다[10,11]. 일본은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1948년부터 단독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은 2001년 간호사, 조산사, 방문간호사 등 직역별 법률로 전문성을 강화하였다[4]. 이외 세계 약 90개국 이상은 의사법, 간호법을 각각 시행하며, OECD 33개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간호법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8].

간호계는 1972년부터 일제 잔재인 1944년 제정된 ‘조선 의료령’에 뿌리를 둔 의료법을 기반으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급변하는 의료계의 현실 반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직역별 특수성과 독자성, 전문성 반영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였다[2,12]. 특히 국제간호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환자 안전이 지켜지며, 간호사를 지원하고 간호업무를 기술하는 법적 틀이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보호를 위해 필

수직임을 강조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간호의 정의, 목적, 간호영역, 간호의 리더십, 교육, 교육기관의 질 수준, 간호인력의 역할과 행위, 질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한 표준간호법을 제안하고 있다[13].

오늘날 간호직은 역량과 교육, 간호 인력의 기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하는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며 복잡한 직업이기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간호사들이 국가의 법적 틀과 규율 감독에 의해 보호되어야만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간호사의 수급 및 적정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간호 인력의 필수 배치 기준을 충족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환자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왜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 여기는 것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다수의 보건의료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단체에도 속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비의료인인 일반인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여러 각도에서 간호법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이자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있으면 그 이유와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의료인이

지각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의료인 110명을 편의추출 하였으며, 대상자 중 누락된 자료 28명을 제외한 총 8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는 신뢰도 95%, 오차한계 $\pm 2.32\%$ 로 할 때 필요한 표본의 수로[14]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비의료인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와 문헌을 참고로 개발한 개방형 질문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간호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그에 따른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그에 따른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호법과 관련된 교육을 듣는다면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이었다. 본 도구의 타당도는 3회에 걸쳐 간호학 교수 3인과 20년 경력 간호사 3인을 통해 검증받았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5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였으며,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한 후 설문을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설문내용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의사를 허락받았으며, 익명성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참여를 허락한다는 사전 동의 내용에 대해 대상자의 서명을 받았다. 설문지는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적게 하였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며, 질문지 작

성에 소요된 시간은 대상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 10분 이내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모집 후 연구 설명문을 이용하여 연구과제, 연구 배경과 목적, 대상, 방법, 기간, 비밀 보장, 연구 참여 중도 철회 및 참여 거부 가능성, 연구 참여시 불이익이 없음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그 중 동의서를 작성한 자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암호화하고 연구자 외에 자료 접근을 제한하도록 별도의 공간에 보관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정보를 보호하였다. 자료는 연구목적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파쇄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제외자 를 포함하여 설문참여에 동의한 전원에게 1만원 상당의 감사품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비의료인이 인식하는 간호법의 인식 정도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 방법이란 내용을 기술하고 체계적으로 범주화하며,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 객관적인 방법이다[15].

1) 범주의 분석

범주의 분석을 위해 내용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2인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목적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전문가와 연구자 간에 내용의 검토와 의논을 통해 추출하였다. 대상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여러 중복응답을 제시하였으며, 대상자들이 기록한 내용은 같은 의미와 비슷한 표현을 같은 범주로 구분하였다. 범주의 분류는 2인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개인별로 수행한 후 5회의 회의를 거쳐 수정과 보완을 거쳤으며, 총 36 개의 범주, 95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각각의 범주

분류 후 내용분석 방법 중 수량적 분석 기법인 빈도수 와 백분율로 기록하였다.

2) 자료의 코딩

관련 내용을 코딩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코딩 프레임을 개발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각 연구자들 간의 신뢰도가 90% 이상의 수준으로 일치할 때 까지 사전연습을 한 후에 실제의 코딩에 들어갔다. 코딩과정에서 모호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자의 주관 하에 토의를 통해 의견을 좁혔는데, 그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은 코더들 (coders) 간의 신뢰도 측정이었다.

3) 신뢰도 및 타당도

2인의 전문가와 연구자 간의 높은 신뢰도를 위해 질문지 일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일치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 내용을 재확인하고 동의를 얻어 분류하였다. 신뢰도는 Hilsti방법을 시행하였는데 12인의 전문가가 5개 내용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약 90%면 적당하다고 보는데[15], 본 연구에서 5개 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99%의 일치도를 보였다. 연구에서 분류된 범주화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10여년간 내용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과 20년 경력 간호사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설문지 조사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여자가 53명(64.6%)으로 남자 29명(35.4%)보다 많았고,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39.79 ± 10.88 세이다. 직업은 사무직이 29명(35.4%)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직 21명(25.6%), 주부 15명 (18.3%), 자영업 12명(14.6%), 학생 3명(3.7%), 무직 2명(2.4%)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에 대해 들어본 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 (year)		39.79±10.88
Gender	Male	29(35.4%)
	Female	53(64.6%)
Occupation	Clerical job	29(35.4%)
	Service position	21(25.6%)
	Housewife	15(18.3%)
	Self-employment	12(14.6%)
	Student	3(3.7%)
	Unemployed	2(2.4%)
Have you ever heard of the Nursing Act?	None	25(30.5%)
	Once or twice	49(59.8%)
	Many times	8(9.7%)
Have you ever thought that the Nursing Act should be passed and become a law?	None	30(36.6%)
	Once or twice	36(43.9%)
	Many times	16(19.5%)
Have you ever searched the Internet or other resources for anything related to the Nursing Act?	None	50(61.0%)
	Once or twice	28(34.1%)
	Many times	4(4.9%)
Where do you usually gain your knowledge on the Nursing Act?*	Internet	36(53.7%)
	Family	2(3.0%)
	Colleague	2(3.0%)
	Friend	5(7.5%)
	Newspapers, magazines, TV	15(22.4%)
	Others	7(10.4%)

*Duplicated responses

이 있습니까?」에 대해 「없다.」 25명(30.5%), 「한두 번 있다.」 49명(59.8%), 「여러 번 있다.」 8명(9.7%)이었고, 「간호법이 통과되어 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 응답으로 「없다.」 30명(36.6%), 「한두 번 있다.」 36명(43.9%), 「여러 번 있다.」 8명(19.5%)이었다.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 응답으로는 「없다.」 50명(61.0%), 「한두 번 있다.」 28명(34.1%), 「여러번 있다.」 4명(4.9%) 순이었다.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검색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42명을 대상으로 「간호법에 대한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에 중복응답한 결과, 「인터넷」 36명(53.7%)으로 가장 높았고, 「신문, 잡

지, TV」 15명(22.4%), 「기타」 7명(10.4%), 「친구」 5명(7.5%), 「가족」과 「직장동료」, 각각 2명(3.0%)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연구결과 비의료인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간호법 정의, 중요성, 간호법 제정시 장점과 단점, 간호법 관련 교육의 필요성」 총 5가지의 내용, 총 36개 범주와 95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1)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법 정의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법 정의는 「간호사 보호」,

「간호사의 업무범위 제시」, 「전문성 확보」, 「의료환경 개선」, 「의료법과 유사」, 「모름」, 총 6개 범주와 16개의 진술문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법 정의에서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32명(39.0%)으로 「간호사 보호」로 범주화하였고, 다음 순으로 ‘잘 모르겠음’ 20명(24.4%), 「모름」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질 높은 의료와 간호 제공’과 ‘의료인의 처우 개선’으로 15명(18.3%)이 응답하여 「의료환경개선」으로 범주화하였다. ‘환자를 간호할 때 지켜야 하는 법규’, ‘법적 제도적 최소한의 장치’가 10명(12.2%)으로 「의료법과 유사」로 범주화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직접 치료를 행할 수 있는 것’ 9명(11.0%)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제시」로 범주화하였다. 가장 적게 나타난 ‘간호사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은 2명(2.4%)으로 「전문성 확보」로 범주화하였다.

2)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법 중요성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법 중요성은 「간호사 법적 보호」, 「생명을 다루는 직업」, 「간호사 권리 보장」,

「업무 환경 개선」, 「간호 의료서비스 향상」, 「의료진 간의 업무 범위 확인」, 「간호사 퇴사율 감소」, 「간호사 이직률 감소」, 「모름」, 총 9개 범주와 23개 진술문으로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법 중요성은 ‘간호사의 인권, 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 ‘근무환경과 대우가 보장’이 32명(39.0%)으로 나타나 「간호사 권리 보장」으로 범주화하였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 ‘환자의 치료에 밀접한 관계’ 18명(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범주화하였다. ‘간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열악한 업무 환경개선’, ‘효율적인 의료체계 분담’ 14명(17.1%)이 응답하여 「업무 환경 개선」으로 범주화하였고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에 대해 보호받음’,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이 11명(11.4%)으로 「간호사 보호」로 범주화하였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의료 시스템의 다양성 추구 촉진’이 8명(9.8%)으로 나타나 「간호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중복되는 처치가 의사와 간호사의 분쟁이나 차이’, ‘타 직종과 명확한 업무 구분 가능’이 4명(4.9%)으로 「의료진 간의 업무 범위 확인」으로 범주화하였

Table 2. Definition of the Nursing Act (*N=82*)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Nurse prot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to protect nurses • Law to follow when nursing • A device to protect the rights of nurses 	32*	39.0
Presentation of the nurse's scope of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ility to practice medical practice directly with a nurse's license • Progress of work outside of the doctor's guidance and excessive work distribution and improvement • Nurses' work stability and patient protection 	20*	24.4
Securing of the expert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ility to maintain the professionalism of nurses • Qualifications for professional nursing 	2*	2.4
Improvement of medical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vision of high quality medical care and nursing care • Type of work for nurses, one nurse for every few patients, etc. • nurse wages • Protective measures for equal horizontal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doctors and patients 	15*	18.3
Similar to the Medical Service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to be complied with when caring for patients • Law that contributes to public health promotion by clarifying the scope of work of nurses and stabilizing their legal status • Legal and institutional minimum devices 	10*	12.2
Don't kn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n't know 	9*	11.0

* Duplicated responses

Table 3. Importance of the Nursing Act

(N=82)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Legal protection of nur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 a nurse acts as a physician, she cannot be protected by the Medical Service Ac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Be protected from unreasonable instructions or demands Guaranteed occupation's stability 	19*	19.5
Occupation that deals with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Occupation dealing with life Close relationship with patient's treatment 	18*	22.0
Guarantee of nurses'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man rights of nurses, guarantee of rights and fulfillment of duties Guaranteed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There are many side effects if there is no law to protect nurses 	12*	14.6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of nurses Improving poor work environment Efficient medical system sharing Improvement of various problems caused by excessive work of nurses and promotion of rights Securing of workforce Positive workplace culture 	14*	17.1
Improvement of nursing care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duction of medical accidents Provision of quality service Satisfaction of the pursuit of diversity in the medical system 	8*	9.8
Check scope of work between medical st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Overlapping treatment is a dispute or difference between doctors and nurses Able to clearly distinguish work from other occupations 	4*	4.9
Decreased nurse resignation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reased nurse resignation rate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high resignation rate 	4*	4.9
Reduced nurse turno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creased nurse turnover rate 	4*	4.9
Don't kn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n't know 	2*	2.4

*Duplicated responses

으며 동일하게 「높은 퇴사율 문제 해결」도 4명(4.9%)으로 나타나 「간호사 퇴사율 감소」로 범주화하였고, 「간호사 이직률 감소」도 4명(4.9%)으로 「간호사 이직률 감소」로 범주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장 적게 나타난 「모름」이 2명(2.4%)으로 「모름」으로 범주화하였다.

3)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법 제정 시 장점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법 제정 시 장점은 「처우 개선」, 「의료서비스 확대」, 「간호의 수준 향상」, 「책임 소재 가능」, 「전문성 재고」, 「팀워크 증대」, 「자부심 강화」, 「업무 범위 구분」, 「모름」, 총 9개 범주와 23개 진술문으로 나타났다(Table 4).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법 제정 시 장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간호사의 권리, 인격보호」, 「간호환경개선」이 44명(53.6%)으로 「처우 개선」으로 범주화하였

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의료인력 확보」,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배치」로 21명(25.6%)으로 「의료서비스 확대」로 범주화하였고, 「충분한 간호 인력으로 인한 서비스 향상」, 「체계적인 간호」로 18명(21.9%)으로 「간호의 수준 향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를 알 수 있음」이 2명(2.4%)으로 「책임소재 가능」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동일하게 나타난 「소속감 및 자긍심 증대」도 2명(2.4%)으로 「자부심 강화」로 범주화하였다. 「간호사로서 전문성이 향상」은 1명(1.2%)으로 「전문성 재고」로 범주화하였으며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향상」도 1명(1.2%)으로 「팀워크 증대」로 범주화하였다. 「간호사의 정확한 일의 범위를 구분」은 1명(1.2%)으로 「업무 범위 구분」으로 범주화하였고, 「잘 모르겠다」도 1명(1.2%)으로 「모름」으로 범주화하였다.

Table 4. Advantages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N=82$)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Treatment impro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rses' rights and personality protection • Improved nursing environment • Improvement of excessive work and stress • Enhancement of morale • Guaranteed job stability 	44*	53.6
Expansion of medical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uring of medical personnel in a national disaster situation • Efficient deployment of medical resources • Contribution to the recruitment of medical personnel and promotion of national health 	21*	25.6
Elevation of the level of nur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rvice improvement due to sufficient nursing staff • Enhancement of the level of nursing care • Systematic nursing • Patient safety, reduc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 Formation of guardian trust • Building trust in doctors 	18*	21.9
Responsibility's clarification is poss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ponsibility can be identified in case of medical dispute 	2*	2.4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roved professionalism as a nurse 	1*	1.2
Increased team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nurses 	1*	1.2
Enhanced self-este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reased sense of belonging and pride • Increased professionalism by increasing the length of service • Pride 	2*	2.4
Classification of work sc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ssification of the precise scope of work for nurses • Distinction between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1*	1.2
Don't kn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n't know 	1*	1.2

*Duplicated responses

4) 간호법 제정 시 단점

간호법 제정 시 단점은 「타 직종과의 마찰」, 「간호사의 피해」, 「간호법의 경직화(업무과다 혹은 업무 축소)」, 「간호인력 증대로 인한 재정문제」, 「법의 정착과 이면」, 「간호사의 단독적 의료행위」, 「모름」, 총 7개 범주와 16개 진술문으로 나타났다(Table 5).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법 제정 시 단점으로는 「모르겠다」가 37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 간 갈등」, 「사회적 갈등 분열 우려」, 「의료인 이외 타 직종과의 마찰」을 범주화한 「타 직종과의 마찰」과 「노조 문제와 같은 장기 파업」, 「의료실수 또는 의료사고 발생」, 「의료비의 상승」, 「저하된 의료서비스 확대」를 범주화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각 15명(18.3%)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 추가 우려」,

「법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이 필요함」, 「업무 범위의 제한」이 6명(7.3%)으로 「간호법의 경직화(업무 과다 혹은 업무 축소)」로 범주화하였으며, 「간호 인력의 증원은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 「인건비 부담」이 3명(3.7%)으로 나타나 「간호 인력 증대로 인한 재정문제」로 범주화하였다. 「과도기에 따른 적응문제」, 「법의 악 이용」을 범주화한 「법의 정착과 이면」과 「간호사의 단독적 의료행위」 각각 2명(2.4%)으로 나타났다.

5) 간호법 관련 교육의 필요성

간호법 관련 교육의 필요성으로는 「주요사항 안내」, 「의료 관련 이론」, 「간호사/환자 혜택」,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모름」, 총 5개 범주와 17개 진술문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5. Disadvantages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N=82)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Conflict with other occup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flicts between medical personnel Concern about social conflict and division Conflict with other occupations other than medical personnel 	17*	20.7
Decreased quality of medical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longed strikes such as union issues Occurrence of medical mistake or medical accident Rising medical expenses Expansion of degraded medical services 	15*	18.3
Intensification of nursing work (excessive work or reduction of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cern about additional tasks other than nursing Nurses' knowledge of the law is required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work 	6*	7.3
Financial problems due to the increased nursing st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crease in nursing staff requires more nursing staff Labor cost's burden 	3*	3.7
Settlement and the other side of the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aptation problems according to the transition period Misuse of the law 	2*	2.4
Nurse's independent medical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Nurse's independent medical practice 	2*	2.4
Don't kn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n't know 	37	45.0

*Duplicated responses

Table 6. Need for the education related to the Nursing Act (N=82)

Category	Significant statements	n	%
Information on important mat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tents and detailed explanation of the Nursing Act Business contents such as actions and treatment included in the Nursing Act Comparative analysis and direction of the Nursing Act of the developed countries Need for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Pros and cons of the Nursing Act 	25*	30.4
Medical treatment related the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oretical learning and job training Medical Service Act Work differences with medical advanced countries Purpose of medical service Nursing needs of skilled nurses 	12*	14.5
Nurse/patient benef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nefits for nurses and patients Education on the provision of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Specialized medical service Progressive achievements such as various researches 	7*	8.5
Nurse's scope of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Clear division of work areas Pride for occupation 	1*	1.2
Don't kn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n't know 	38*	46.3

*Duplicated responses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법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모르겠음」이 38명(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름」으로 범주화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간호법의 내용 및 세부설명」, 「간호법에 포함되는 행위와 처치 등 업무

내용」, 「선진국 간호법 비교 분석과 방향성」,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법의 장단점」이 25명(30.4%)로 「주요사항 안내」로 범주화하였다. 「이론학습과 직무 교육」, 「의료법」, 「의료 선진국들과의 업무 차이」, 「의료

서비스의 목적’, ‘숙련된 간호사의 간호 필요성’이 12명(14.5%)로 「의료 관련 이론」으로 범주화하였다. ‘간호사와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육’,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다양한 연구 등의 진취적 성과물’이 7명(8.5%)로 「간호사/환자 혜택」으로 범주화하였고, ‘업무 영역을 정확히 구분’, ‘직업에 대한 긍지’가 1명(1.2%)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범주화하였다.

VI. 논의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이자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와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여러 각도에서 간호법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69.5%인 57명은 간호법에 대해 한두 번 들어봤거나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고,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 검색해 본적이 있는 경험이 한두 번 있거나 여러 번 있는 경우가 총 32명(39.0%)이었다. 간호대학생의 34.3%는 간호법 관련 내용을 수강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41.6%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었으며[16],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73.5%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정보를 얻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17]를 고려할 때, 일반인이자 비의료인인 연구 대상자의 간호법에 대해 접한 경험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료 검색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약 53.7%가 인터넷에서 간호법에 대한 지식과 내용을 접함은 그동안 다양한 언론매체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던 협회 매체가 큰 역할을 하였으리라 사료된다.

간호법이 법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 36.6%의 대상자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응답하였으며,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 61.0% 대상자가 ‘없다’라

고 응답하였다. 현재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려야 할 선진적인 국가 의료시스템은 ‘간호법’ 제정 없이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간호법의 정의에 대해 일부 대상자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제시(24.4%), 전문성 확보(2.4%)와 같이 비교적 간호법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대다수는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39.0%), 의료환경개선(18.3%), 의료법과 유사(12.2%)하다는 인식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 수준은 다소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법 제정 취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 가능한 수준에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철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22.0%)이며,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17.1%), 의료진 간의 업무 범위 확인(4.9%), 권리보장(14.6%) 및 간호사 보호(11.4%)가 요구되기에 간호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의 보조’라는 다소 불명확한 개념으로 기술되어 있다. 많은 선진 국가들이 간호법을 단독 입법하여 간호 및 조산행위 관련서비스 활동의 법적책임 강화, 간호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로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이 필요하겠다.

또한 일부 대상자는 간호사 퇴사율(4.9%)과 이직률(4.9%) 감소가 요구되기에 간호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간호사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사정, 의학적 판단 및 중재가 필요한 직업이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 의료상황을 고려할 때, 병원과 치료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지역과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 이를 위

한 가정간호, 방문간호, 일차의료 및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수요는 점차 늘어나기에 숙련된 간호 인력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매우 요구된다 [18-19]. 이에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의료법이라는 단일 법안에 뚜여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간호법’이라는 단독법안 제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법 제정 시 장점으로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고(26.8%),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며(25.6%), 간호수준이 상승(21.9%)된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는지 모르겠다(45.0%), 타 직종과의 마찰과 간호사의 피해가 우려됨이 각각 18.3%로 나타났으며, 간호법의 경직화(7.3%), 간호인력 증대로 인한 재정문제(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의료법이 명확한 법적 지위와 규제내용, 간호인력 간 업무와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20]. 과거 처방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는 예방과 관리,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의료법 내에 간호업무와 간호인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인 체계 내에서 정성 측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21]. 분명 간호사의 역할을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변화하였음에도 제도적 규정화나 사회적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2], 사회 변화에 따른 입법 수요나 현실적 이슈에 대한 다학제 간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닌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법, 국민 모두를 위한 법임을 명확히 하고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대상자의 46.3%는 간호법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주요사항 안내(28.0%), 의료관련 이론(14.5%), 간호사/환자 혜택(8.5%) 및 간호사 업무 범주(1.2%)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호’와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모호성에서 벗어나 비의료인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 직역 간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주와 진료에 대한 유형 및 내용의 명확한 설명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전반적인 의료기술 및 환경

의 발달은 기대수명을 증가시키고, 질병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숙련된 간호인력이 절실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닌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법, 국민 모두를 위한 법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개방형 질문 5문항을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목적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자 간에 내용의 검토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추출하였기에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 및 일부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인이자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여러 각도에서 간호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일반인이자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와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법이 간호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시함을 알고 있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업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간호사 권리 보장이 요구되며 간호사 보호, 간호사 의료서비스 향상, 의료진 간의 업무 확인 및 간호사 퇴사율·이직률 감소를 도모하기에 간호법 제정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간호법 제정 시장점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의료서비스 확대 및 간호의 수준 상승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타 직종과의 마찰, 간호사의 피해, 간호법의 경직화 및 간호

인력 증대로 인한 재정 문제가 단점이 되리라고 인식하였다. 간호법의 주의 사항 안내, 의료 관련 이론, 간호사/환자 혜택 및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간호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지역의 일반인과 타직역 간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이 필요하겠다. 둘째, 비의료인이자 일반인이 간호법에 대한 인식과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간호법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간호법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 체계이자 간호인력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법이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역 간 업무갈등이 해소되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킬 것이라 생각된다.

Reference

1. Song MH, A review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nursing act. *Legal Theory and Practice Review*. 2022;10(3):313-341.
<https://doi.org/10.30833/LTPR.2022.08.10.3.313>.
2. Kim KH, Kim HJ. Legislative vacuum and dilemma: analysis of delays in establishment of nursing.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2020;12(2):5-34.
<https://doi.org/10.22809/nars.2020.12.2.001>.
3. Public Health Nurses Association. Nursing law needs to be enacted [Internet]. Seoul:Author;2022 [cited 2022 April 28]. Available from:
https://www.kphn.org/bbs/board.php?bo_table=news_3&wr_id=168
4. Bill Information. Nursing law [Internet]. Seoul: Author;2021 [cited 2021 May 17]. Available from: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
5. Shin SS. "People power party is to enact the nursing law immediately!"... Will it be directly referred to the plenary session on the 9th?. *The Hankyoreh*. 2023 February 8. Available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8874.html
6. Korean Nurses Association. The Nursing law seen by a medical lawyer "The nursing law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ivate practice of nurses". Seoul:Author;2023 [Internet].[cited 2023 February 2]. Available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UbFeDttJvIc&t=1s>
7. Korean Nurses Association. The Nursing law does not encroach on the work of other occupations [Internet]. Seoul:Author;2023 [cited 2023 February 10]. Available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Z9MqS8e7Wx8>
8. Shin SR. Wh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pport enactment of nursing act. *The Hankyoreh*. 2022 May 20. Available from: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39747.html>
9. Korean Nurses Association. 2022 International nurses day video congratulatory messag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oul:Author;2022 [Internet]. [cited 2022 May 13]. Available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6MpFGk4CMuQ>
10. Kim KK. A comparative study on NSCSBM model and KNA draft nursing practice act.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2005;12(10):69-85.
11. Ghadirian F, Salsali M, Cheraghi MA. Nursing professionalism: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Iran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Research*. 2014;19(1):1-10. PMID: 24554953; PMCID: PMC3917177.
12. Moon JT, Oh HC. Legal review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fessional nursing system – focusing on the enactment bill on nursing method-. *Legal Theory and Practice Review*. 2021;9(3):155-184.4
<https://doi.org/10.30833/LTPR.2021.08.9.3.155>

13. Korean Nurses Association. Nursing law! Why is nursing law necessary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eoul:Author;2023 [Internet]. [cited 2023 January 17]. Available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ySPvt-O69Z8&t=462s>
14. Cochran WG. Sampling techniques. Chichester WS: John Wiley & Sons; 1977.
15.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4.
16. Park KJ, Kwon M. The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18(11):1-18.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1.1>
17. Lee HJ, Kang HS. The perception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6;12(3):355-364.
18. Lee YJ, Oh KY. Review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Democratic Legal Studies. 2022;78: 145-178. <http://dx.doi.org/10.15756/dls.2022..78.145>
19. Kim JH. A reasonable nursing resources reorganization plan through enactment of nurses act. Ilkam Law Review. 2015;32:215-261.
20. Beom KC.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nurses.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2014;15(2):285-316.
21. Song HG, Yoo SH, Cheong HI. Possibility of legislation an exclusive nursing law in Korea: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medical law, korean nursing law proposed in 2022, and article 139, nursing, education law of newyork state. Nursing and Health Inssues. 2022;27(2):174-191.
<https://doi.org/10.33527/nhi2022.27.2.174>